

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23. 2. 28 선고 2022가단1079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1. B

2. C

3. D

변 론 종 결 2023. 2. 14.

판 결 선 고 2023. 2. 28.

주 문

1. 원고에게,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중 피고 B은 지분 3/7에 관하여, 피고 C, D는 각 지분 2/7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등기와 2005. 2. 17. 접수 제5368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가. 피고 D

: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나. 피고 B, C

: 자백간주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, 제150조 제3항)

판사 강문희

별지